

#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633
----------	------

2026년 4월 28일  
보건복지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4월 6일 신동원의원 (찬성21인)
- 회부일자 : 2026년 4월 7일
- 상정일자 : 제335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 
【2026년 4월 21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## II. 제안설명의 요지 (신동원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- 2025년 5월 19일 공포·시행된 「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서울특별시조례 제9628호) 제3조1항제4호에 따라, 서울시는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범위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뿐만 아니라 유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음.
- 그러나 같은 조례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를 여전히 「독립유공자법」상의 등록된 자로만 한정하고 있음. 이에 같은 조례 내에서 지

원대상자와 지원사업의 대상자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.

- 또한, 같은 조례 제3조1항제6호의 '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' 규정은 조문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부족하여 이를 삭제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지원사업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부족한 조문 삭제 (안 제3조1항제6호 삭제).

나. 조례의 지원대상자를 지원사업 대상자와 일치(안 제4조 삭제).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

### 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윤혜숙)

#### 1 개정안의 개요

-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3조(지원사업)의 대상과, 제4조(지원대상자)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조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음.

#### <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지원사업) ①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지원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유족 등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지원대상자) <u>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서울특별시 관할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법 적용대상으로 등록된 자로 한다.</u></p>	<p>&lt;삭제&gt;</p>

## 2 검토의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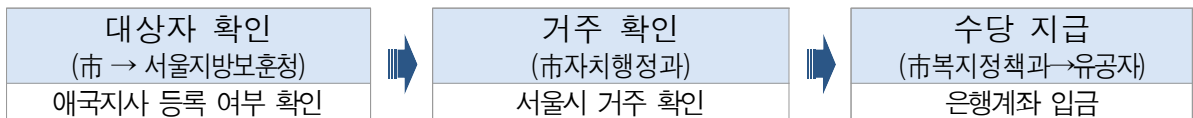
### 가. 서울시 독립유공자 지원사업 현황

- 서울시에서는 「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해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(선순위 유족 1인)을 대상으로 수당 지급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.
- 이 가운데 서울시 독립유공자는 본인 1명, 선순위 유족 2,241명( '26년 1월기준) 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조의금, 생활보조수당,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지급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.

#### ※ 서울시 독립유공자 대상 지원사업 현황

##### ○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조의금

- 근거 : 「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- 지급대상 : 서울시 거주 생존 애국지사 1명('25. 12월 기준)
- 지급기준 : 보훈명예수당(개인별 1,000천원/월), 사망조의금(1,000천원)
- 지원방법 :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유공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에 입금



- 소요예산 : 12백만원

##### ○ 생활보조수당

- 근거 : 「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
- 지급대상 :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 4,200명 (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상

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)

※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(연령기준 폐지, '25. 1월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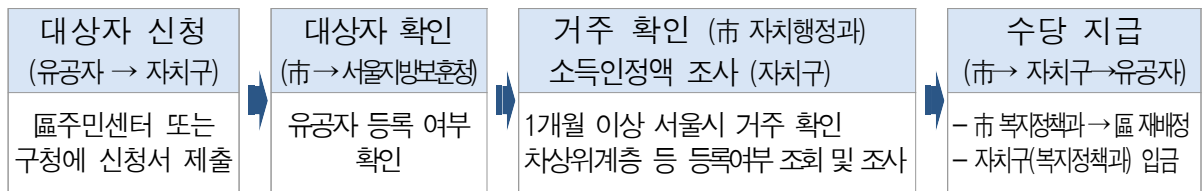
❖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인정액

- 기초 생계급여 수급권자(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),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- 2026년 기준 중위소득

가구원 수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
소득(원/월)	2,564,238	4,199,292	5,359,036	6,494,738	7,556,719	8,555,952

- 지급기준 : 매월 200천원 지급

- 지원방법 :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유공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에 입금



- 소요예산 : 10,080백만원

○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

- 근거 : 「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5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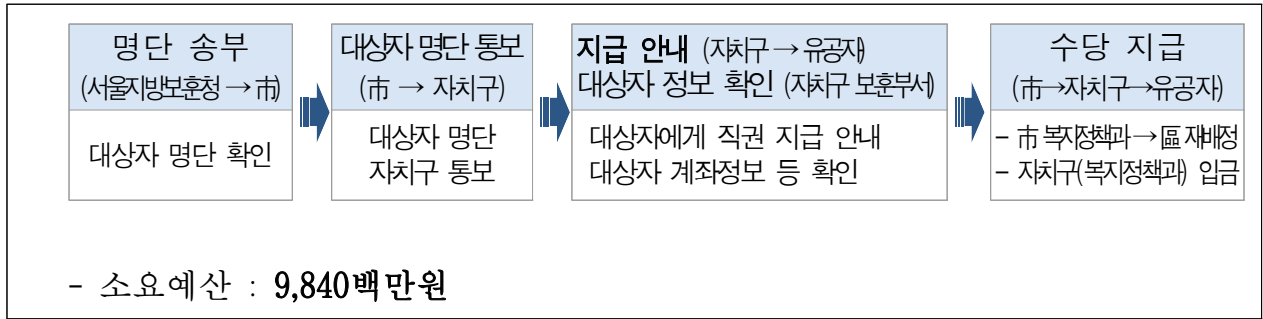
- 지급대상 : 국가보훈부 ‘독립유공자 (손)자녀 생활지원금’ 대상자 4,100명

❖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 개요

- 지급대상 : ‘독립유공자 보훈급여금’ 중 보상금(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)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※ 선정방법 : 생활수준 고려
- 지급금액
  - ①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보훈부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: 월478천원
  - ② 기준 중위소득 70%이하, 기초연금수급자 : 월345천원

- 지급기준 : 매월 200천원 지급

- 지원방법 :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유공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에 입금



## 나.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추진 경위 및 현황

- 독립유공자는 「독립유공자법」에 의해 국비진료,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등 기본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, 서울시에서는 이와 별도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등을 대상으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의료비 또는 약제처방비를 지원해오고 있었음.
- ‘25년 기준 서울시의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및 그들과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가 대상이었고,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 사망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할 시, 배우자는 당해연도까지만 의료비가 지원됨. 이는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의 연령대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고령인 이들의 배우자에게 수혜가 제한된다는 한계가 존재했음.
- 2025년 제 330회 임시회에서 이와같은 해당사업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의원발의로 수권자(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)이 사망한 후에도 배우자에 대한 의료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됨.
- 이에 따라 2025년 10월부터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사망

시에도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계속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, 금년도 소요예산은 1,316백만원으로 수립됨.

※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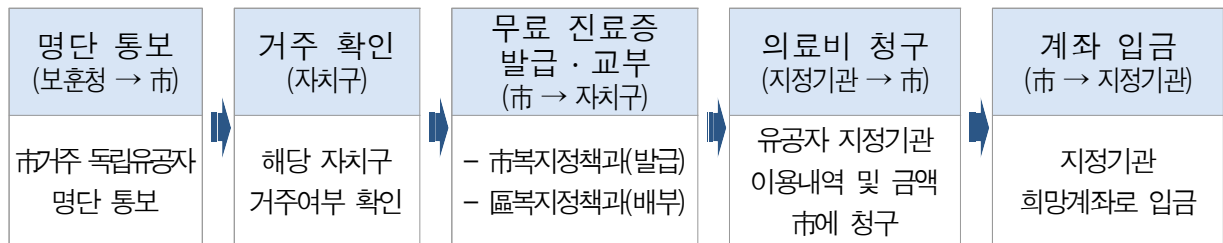
○ 근거 : 「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○ 지원대상 : 독립유공자·선순위 유족과 배우자

※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시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계속 지원 ('25. 10월~)

○ 지원내용 : 지정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전액지원(진료비, 약제비)

○ 지원방법 : 지정기관에서 매월 市에 청구, 市는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입금



※ 지정기관 : 33개소(시립병원 8개소, 약국 25개소)

○ 소요예산 : 1,316백만원

다. 조례개정의 필요성 및 검토의견

① 지원대상의 삭제 (현행 제4조)

○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, 그리고 유족의 배우자가 서울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현행 조례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례 내 지원대상 범위에 차이가 존재함.

-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현행 조례 제4조를 삭제하고자 하며, 이는 조례 내 관련 규정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.
- 현행 조례 제4조는 조례 전반에 적용되는 지원대상자의 기본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, 이미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(이하 독립유공자법)」 제5조에서는 유족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,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, 등록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,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인만을 의미하며, 이는 조례상의 대상자도 같은 대상으로 적용된다 할 수 있으므로, 제4조 삭제는 가능할 것임. 또한, 현행 조례 제3조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각각의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, 이를 근거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임.

제3조(지원사업) ①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.

1. 생존애국지사에게 월 10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
2. 애국지사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 지급
3. 3.1절, 광복절 기념일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위문금 각 10만원 지급(직계후손이 선순위자일 경우 그 사촌이내 형제·자매를 포함한다)
4.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, 그리고 유족의 배우자가 서울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

5.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월20만원의 생활지원수당 지급
- 가.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
  - 나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인 사람 및 「기초연금법」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그 밖에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③ 지원사업 내용의 삭제 (현행 제3조제1항제6호)

- 본 개정안에서는 제3조제1항제6호의 “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”을 삭제하고자 함. 현행 조항은 그 내용이 포괄적 재량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재정지출의 통제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.
- 해당 조항은 사업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, 시장의 판단에 따라 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규정으로서, 조례의 명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.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서도 입법사항을 집행기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며, 조례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.
- 따라서,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법제처 입안기준상 명확성의 원칙을 확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향후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사업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

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입법적 통제와 제도적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※ 부서 의견 : 원안가결

- 현행조례 제3조1항제4호의 유족범위에 대한 확대해석이 발생할 수 있으나, 이는 지침으로 별도 기준 마련을 통해 보완가능하며, 조례의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의 의견임.

### 3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조례 내 지원대상 정의의 불일치를 해소하고, 포괄적 재량 규정을 정비하여 보훈행정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함.
- 특히 현행 제4조(지원대상자) 삭제를 통해 조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, 현행 제3조(지원사업)에서 각 지원사업별로 대상자가 이미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, 일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.
- 또한, 시장의 포괄적 재량권인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는 것은 법제처의 입안기준 상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며,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가능할 것임.
- 다만, 신규사업 추진시 행정의 유연성이 일부 제한될 우려가 있으나, 이는 향후 필요 사업추진시 조례개정을 통해 보완이 가능할 것임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신동원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63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6년 04월 06일

발 의 자: 신동원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 
곽향기, 김규남, 김용호,  
김원태, 김재진, 김춘곤,  
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  
남창진, 도문열, 문성호,  
유만희, 이경숙, 이새날,  
이성배, 이종태, 이효진  
의원(21명)

## 1. 제안이유

- 2025년 5월 19일 공포·시행된 「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서울특별시조례 제9628호) 제3조1항제4호에 따라, 서울시는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범위를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뿐만 아니라 유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음.
- 그러나 같은 조례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자를 여전히 「독립유공자법」상의 등록된 자로만 한정하고 있음. 이에 같은 조례 내에서 지원대상자와 지원사업의 대상자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.
- 또한, 같은 조례 제3조1항제6호의 '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' 규정은 조문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부족하여 이를 삭제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사업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부족한 조문 삭제 (안 제3조1항제6호 삭제).

나. 조례의 지원대상자를 지원사업 대상자와 일치(안 제4조 삭제).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독립유공자법」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유족”을 “유족 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3조(지원사업) ① 서울특별시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 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<u>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사</u> <u>업을 시행한다.</u>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6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</u> <u>인정하는 사업</u>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4조(지원대상자) <u>지원대상자는</u> <u>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서</u> <u>울특별시 관할 보훈청 또는 보</u> <u>훈지청에 법 적용대상으로 등록</u> <u>된 자로 한다.</u></p>	<p>제3조(지원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<u>유족 등</u>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

#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### 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의 대상자 범위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, 개정에 따른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### 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과
재정분석과장	이 선 희
추계세제팀장	김 중 헌
추계분석관	선 동 규

☎ 02-2180-7952

e-mail : abasiclife@seoul.go.kr

**※ 이 자료는 의안 발의 참고용입니다.**